

#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273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11. 7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제안이유

- 달성청년혁신센터가 위치해 있는 달성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,4층 (645.58㎡)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통해 청년(예비)창업가 모집 및 입주·정착 지원, 청년들의 커뮤니티 및 청년세대간의 소통을 지원하여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현황
  - 기관명 : 달성청년혁신센터
  - 위치 : 화원읍 성천로 5(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,4층)
  - 수탁기관 : 대구경북과학기술원
  - 수탁기간 : 2023. 1. ~ 2025. 12. (3년)  
※ 재계약을 통해 2026. 1. ~ 2028. 12.까지 3년 연장
  - 규모 : 645.58㎡

시설명	층별	시설구성	주요기능
달성청년 혁신센터	3층	Start-Up Cafe	- 각종 행사 개최 장소,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카페 공간
		센터운영사무실	- 센터 운영 및 청년 애로사항 해결 등
		디지털스튜디오	- 영상촬영, 제품촬영, 라이브 방송 등을 위한 공간
	4층	입주기업 공간	- 청년창업기업 입주공간 (2인실-10개, 4인실-1개)
		메이커스페이스	- 시제품제작, 양디어 실현 공간(3D프린터, UV 프린터 보유)
		회의실	- 회의, 토론, 멘토링 운영 등

○ 사용료 면제

- 근거 :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및 동법 시행령 의거 대구경북  
과학기술원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임
- 면제규모 : 달성청년혁신센터 3,4층(645.58㎡)
- 면제기간 : 2026. 1. 1. ~ 2028. 12. 31. (3년)

**3. 참고사항(관계법령)**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 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 제17조(사용료 감면)
- 『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』 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
- 『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』 제2조(특정연구기관)
- 『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』 제3조(연구기관의 지정)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**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  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
  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  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
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- ② ~ ③ (생략)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**

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

- ① ~ ② (생략)
-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~ 13. (생략)
  1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(이하 “정부출연연구기관등”이라 한다)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- ① ~ ④ (생략)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
1. ~ 3. (생략)
  4.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## 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

### 제2조(특정연구기관)

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·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(이하 “특정연구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## 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

### 제3조(연구기관의 지정)

법 제2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.

3.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